###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 관련 1197 제 안 일 자 : 2016년 6월 16일 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# 1. 수정이유

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의무규정과 전담추진반의 설치에 대한 시장의 조직권 침해 논란 여지가 있어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, 전담추진반의 명칭은 실무협의회로 수정이 필요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수정함(안 제7조제1호).
- 나. 전담추진반을 실무협의회로 수정함(안 제8조).

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「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」 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호 중 "구성·운영한다"를 "구성·운영할 수 있다"로 한다.

안 제8조 제목 중 "전담추진반"을 "실무협의회"로, 같은 조 제1항 중 "전담추진반을"을 "실무협의회를"로, 같은 조 제2항 중 "전담추진반의 반장"을 "실무협의회의 장"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	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
제7조(성능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 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 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(이하	
'성능개선위원회'라 한다)를 <u>구성·운</u> 영한다. ②~⑥ (생 략)	<u>구성·운</u> <u>영할 수 있다.</u> ②~⑥ (제정안과 같음)
제8조(전담추진반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(시 산하 투자기관을 포함한다)	
의 담당자 등으로 <u>전담추진반을</u> 구성·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	
② 제1항의 <u>전담추진반의 반장</u> 은 제7조제3항의 간사가 된다.	· ② <u>실무협의회의 장</u> 

#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노후기반시설"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관리주체인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과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.
- 2. "유지관리"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·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·보수·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성능개선"이라 제2호의 유지관리 중에 미래의 수요변화 및 다양화

- 에 대응하여 노후기반시설의 제원이나 성능 및 효율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.
- 4. "장수명화"란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연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구조 및 내구 성능을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.
- 5. "생애주기비용"이란 시설물의 건설, 사용, 유지관리, 폐기,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.
- 6. "잔존수명"이란 시설물의 구조성능과 내구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예측한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노후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실태평가보고서 작성)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기반 시설(이하 '노후기반시설'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

시설물별로 조사·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.

- 1.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
- 2. 이용수요(또는 용량)의 변화와 미래예측
- 3.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
- 4.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
- 5. 보수·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
- 6. 잔존수명 평가
- 7.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
- 8. 성능개선의 필요성 판단(필요시 기본계획 포함)
- 9. 장수명화의 필요성 판단(필요시 방안제시 포함)
- 10.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에 따른 미래가치
- 11. 준공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·장수명화를 위한 소요 재 정규모
- 12.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
-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 제6조부터 제7 조의2까지에 의해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서울 특별시(이하 '시'라 한다)가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6조(종합관리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

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(이하 "종합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.

- ②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1.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
  - 2.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기본계획
  - 3.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
- 4.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
- 5.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·성능개선·장수명화 관련 연구·개발 투자계획
- 6.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성능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 는 자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 (이하 '성능개선위원회'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(이하 '위원'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구성한다.
    - 1.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'의회'라 한다)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

- 2. 시 관계 공무원
- 3. 기반시설 건설·유지관리등 관련 산업체·학교·연구기관 전문가
- 4. 기반시설 건설·유지관리등 관련협회 전문가
- 5. 기타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에 기여한 사람
- ③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'위원장'이라 한다)은 시 관계부서의 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시 관계부서의 국장과 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관계부서 과장 중 에 지명한다.
- ④ 성능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
  - 1. 제5조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
- 2. 제6조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
- 3.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- ⑤ 성능개선위원회가 노후기반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시장 은 원활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장은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성능개선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.
- 제8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

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(시 산하 투자기관을 포함한다)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7조제3항의 간사가 된다.
- 제9조(의회보고) 시장은 종합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갱신되는 경우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수당 및 여비) 성능개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평가보고서 최초 작성) 제5조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 최초 작성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